

학사운영관리위원회규정

제정 : 2022.10.01

개정 : 2023.10.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에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023.10.16.>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결관리, 휴·보강, 수업기간 준수에 관한 사항
2. 성적부여, 재수강, 학사경고 등에 관한 사항
3. 중요 학사 민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학점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

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록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 및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